

“

학술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 필요

”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은 업무 전산화에서 나아가 디지털도서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기존 도서관의 설립목적이 자료자체를 보존하거나 혹은 복제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 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특히 저작권법상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은 자료의 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복제의 질이 원본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의 내용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여부에 관계없이 통신망을 통해 일반공중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디지털기술은 도서관의 기능을 한층 넓혀주는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물론 디지털도서관환경에서 제공되는 목록, 초록, 색인 DB는 저작자의 권리와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촉진시키는

면이 큼으로 도서관의 면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Full-Text(원문)서비스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에 저작권과금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해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해의 균형을 위해 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현행 저작권법상 신탁단체가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을 받아 계약을 맺고 사용량에 따라 분배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학술정보분야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측에서 볼 때는 누가 저작재산권자인지 알기 힘들고, 안다 하더라도 일일이 저작권자의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자에 대한 충분한 소재정보의 제공 없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 강화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둔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학술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오 지 은
<첨단학술정보센터
국제협력연구팀장>

주)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권리행사의 대리 및 중개를 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의 집중관리단체가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에 비례해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도 확장해야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대로 짚어보려면 먼저 저작권법 개정의 별미가 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 160여 국의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개최된 WIPO 외교 회의 마지막 날인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이 조약은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회의는 한마디로 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정보의 생산국인 선진국과 주로 소비하는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간에, 또 정보 생산자인 저작권자와 소비자인 이용자간의 이해가 부딪친 협상장이었고, 따라서 조약도 난산 끝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조약에 담긴 정신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예전보다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했느냐, 그렇지 않고 저작된 소유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했느냐 하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저작자와 그 이용자인 공중의 권리 균형을 강조해온 미국의 다섯 개 도서관 단체들은 조약 체결 사흘 뒤에 공동

명의로 새로운 조약이 균형을 취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실



정윤석
〈LG상남도서관 부관장〉

WIPO 저작권조약 전문에는 “베른협약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정보에의 접근과 같은 대다수 공중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라는 명쾌한 문구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아날로그 시대에 각국의 입법에 반영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존속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조약과 별도로 채택된 합의록에서는 디지털 기술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예외와 제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곳곳에서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저작권조약이 담고 있는 균형감을 개정될 국내 저작권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소유자들이 저작권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와 배포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그 복제물의 품질이 원본과 다름없어서 엄청난 침해 행위가 자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작자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한껏 누리면서 이용자에게는 침해 의시가 있든 없든 단지 침해 가능성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법화시키려는 불공정한 처사일 수도 있다. 만약 저작권자의 입장에 서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한다면 이는 선량한 공중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백안시하고 손발을 묶는 행위나 다름없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저작자나 저작물의 이용자나 똑같이 누려야 공평하다. 아날로그 시대에 허용되면 공정 이용, 사적 이용, 도서관을 통한 이용은 저작자의 사적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최소한의 보호 막인 만큼 디지털 시대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전송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한 배포권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공정 이용의 범위내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하고, 도서관 또한 조사 연구의 목적으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저작권법이 허용해온 범위 안에서 전송을 포함한 여하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또는 자체 보존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만큼 그 권리의 제한과 예외도 똑같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예외는 한 치의 손상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WIPO 저작권조약의 정신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사회교육기관인 도서관의 존재 가치를 길이 보전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자료 〈3〉 '도서관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주요 참고문헌 : 학위 논문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 문현관련자료 코너

* 논문명 가나다순으로 기재, 서지사항은 논문명/저자명/수여교/발행년도/학위구분 순으로 기재

-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오영화/01학여대/1997/석사
-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윤선영/중앙대/1997/박사
- 서지유т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연구: 저작권법과 관련하여/홍재현/중앙대/1993/박사
- 저작권법과 납본제도에 관한 연구/이희득/중앙대/1986/석사
- 저작권법 중 도서관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양미자/01학여대/1992/석사
- 저작권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이순자/연세대/1988/박사

전자도서관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사용권 보장되어야

“ ”

요즈음 대학도서관에서는 경쟁처럼 전자도서관 구축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자도서관만 실현되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상황은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의 제반 여건들은 감안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이야기 하는 학자들과 외국의 몇몇 사례만 가지고 전자 도서관 구현의 가능성은 이야기 하는 언론매체 및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생각이 듈다. 물론 이 들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는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불만은 최종적으로 현자의 사서가 듣게 된다.

실제로 어떤 대학도서관에서는 관련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과연 이런 전자도서관에서는 어떤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서비스하고 이용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어떤 대학도서관에서는 석, 박사 학위논문을 전문 데이터베이스(FULL TEXT DB)화 하여 서비스 한다고 발표하였다.



황 남 구
<포항공대 학술정보센터
학술정보팀 과장>

이런 영향 때문인지 대학도서관에서는 우후죽순처럼 대학 자체 간행물 및 석, 박사 논문에 대하여 전문 DB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들은 저작권 관련 법조항을 얼마나 충실히 검토해보고 전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전문 DB구축 건수는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서로서 전자도서관 구축의 기초 조사로 전문DB 구축시 관련되는 저작권법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저자의 사후 50년간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 소속 대학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나 석, 박사 학위논문도 저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전문DB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구축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연구 결과물들은 거의 이용 가치를 상실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향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자와 대학이 협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저작권에 대한 위임장 작성 등).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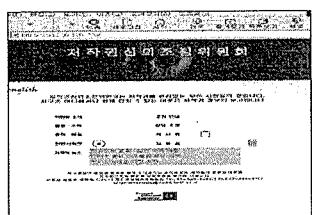
이미 저작이 완료된 자료들에 대하여는 저자 개인을 추적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저자의 추적이 상당히 어렵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자기 대학의 간행물은 DB(전자저널, 영화 등)을 접속하여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로서 전자도서관 구축을 원활히 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 DB구축의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나 석, 박사 학위논문은 분명히 저자의 연구 결과물이지만, 이 글들은 연구과제 수행과 학위 취득을 위해 의무적 저작권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이 거론되기 이전에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

(약 20여부)을 대외 도서관 배포용으로 대학도서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료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은 저자의 영광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나 석, 박사 학위논문으로 학교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료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실제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이를 널리 이용시킬 목적으로 원본을 변형하지 않고 전문 DB를 구축하여 대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한해서 말이다. 또한 전문 DB를 구축하여 영리를 추구할 시에는 별도로 저자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자료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국내의 대학에서 간행된 연구보고서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전문 DB구축이 활성화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연구 및 교육의 수준도 향상되리라고 본다.

저작권 관련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cdcc.kcaf.or.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8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97년 12월 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저작권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등의 국제조약 全文 ▲저작권 관련 용어 해설 ▲상담 사례 235건 및 조정 사례 20여 건을 볼 수 있으며, 국내외의 저작권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가 링크(link)되어 있어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저작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의 공정사용(Fair Use)은 보장되어야 한다

“ ”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널리 이용시키는 사회적 기관이다. 모든 사람은 도서관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자료의 평등한 이용을 제한하거나 도서관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아서는 안된다. 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저작권법의 기본목적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자극함으로써 문화와 관련산업의 발전(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은 저작권소유자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원하는 사회적 욕구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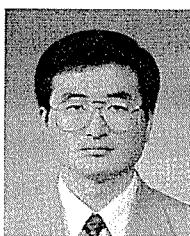
만일, 기본목적을 벗어나 저작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문화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며,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교육, 시사보도, 학술, 연구, 개인적 및 가정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이용(Fair Use)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경우 2)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복제를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도서관과 관련한 공정사용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도서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첫째, 도서관에 배포권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도서관의 대출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결과를 냉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 대여점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료를 대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하게 배포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도서관에 일어나는 모든 대출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전액보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도서관이 목록, 색인, 초록 등을 작성하는 행위는 자료의



조 왕 Kun
<한양대학교도서관 사서>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저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따라서, 초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으로부터 도서관이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공정이용의 원칙이 디지털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은 저작권소유자와 공중이 함께 향유해야 한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오로지 전자적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이 진정으로 그 목적인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권리는 디지털시대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복제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도서관 자료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도서와 같이 사적이용원칙에 의해 개인적으로 도서관 또는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전송에도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또는 전송으로 얻은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도 공정사용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의 정보이용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일시적인 복제(프록시서버, 오프라인브라우저, 캐쉬 등)는 당연히 저작물의 복제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발전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홈페이지의 서브도메인 링크, 검색로봇에 의한 홈페이지링크 등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로 보지 말아야 한다.

도서관은 책자는 물론이고 디지털도서관의 자료도 공정사용과 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의 기본목적과 공정이용의 원칙은 그 저작물을 수록한 매체나 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정보화시대에 디지털화되어 생산된 정보를 공정사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보를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하고, 지식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공정이용을 침해하는 규제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하며, 도서관, 교육자, 저작자, 통신업계, 이용자 등 관련자가 참여하는 전문적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사용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자료도 공정사용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도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사례 1〉

서랑여고 3학년 열심반 “이영미”양 영어보충교재 값이 10,000원, 과목마다 이러니 교과서 외에 보충교재 값이 10만원을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반 친구인 세연이와 상의하여 유니의 보충교재를 빌린다. 학교도서관에 가서 보충교재를 몽땅 복사한다. 복사기 앞엔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가 있다. <본 복사 기로는 도서관내의 자료만을 숙제를 위해서 1인당 1부씩 만을 부분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충 프린트 등을 몰래 복사하다가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걸려서 혼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는 저쪽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바쁘다. 이곳을 볼 틈이 없다.

서랑여고 3학년 영어를 담당한 최저작 선생님은 학교 앞 서점 주인과 보충교재로 지정한 출판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는다. 당초 약속한 학생수에 비해서 보충교재가 절반도 안 팔린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책을 왜 안 사는 것인지 확인과 독려를 해달라고 한다. 최저작 선생님은 그 다음시간 학생들의 수업준비를 확인한다며 보충교재 구입여부를 검사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이럴수가? 도대체 어디서 복사



이 덕 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를 한거야? 학교도서관의 복사기가 시중의 복사 가격보다 싸기에 도서실에서 했다고 한다. 최저작 선생님은 사서교사에게 노골 적으로 항의하기에는 자신도 뭔가 캉기는 것인 있는지 그렇다고 복사기를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사서교사에게 가서 넘지시 한마다 한다. “아이들이 도서관 복사기로 보충교재를 복사하나본대 잘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선생님이 곤란해질지도 몰라”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과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무렵 이기쁨 사서교사는 제시간에 퇴근할 수가 없었다. 도서관에 복사기가 없으니 아이들은 백과사전을 교문 밖 문방구로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몽당 베껴 쓰느라 정신없는 아이들을 퇴근시간 한참 뒤에도 기다려야 했다. 그러던중 도서관에 설치된 무인 카드 복사기가 이기쁨 사서교사의 해결사가 되었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는 교과 담당교사들과의 교수학습 협력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은근히 복사기의 정밀한 판리나 철거 요구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

이기쁨 사서교사는 이번엔 정말 곤혹스러워 한다.

〈사례 2〉

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에서 환경오염과 청소년문제를 모듬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2학년 12개 학급에 제시가 되었다. 중간고사 성적에 30점 반영이 되는 과제이다. 학생들은 시험성적에 반영이 되기도 하기에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참고하려고 한다. 학교도서관은 난리가 났다. 이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난감하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자료의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에 대하여 나와 있는 자료가 1부뿐이라 학생들이 그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만도 오래 걸린다. 사서교사는 중요한 책과 시사간행물 등을 몇부씩 미리 복사해서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돋는다.

〈사례 3〉

멀티미디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에게 이번엔 교장선생님이 도서관 책의 내용을 스캐닝하거나 데이터변환을 통해서 서버 컴퓨터에 올리라고 한다. 학교도서관 자료의 대부분인 문학작품등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터인데 하면서 작업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학교도서관도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위의 사례들은 실제로 지금 학교도서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문현자료 복사에 관한 문제는 이미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간 사례이다. 타 관종의 도서관에서는 주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

하고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그 관종의 독특한 성격상 – 이용자의 나이, 경제력, 교육방법 등 – 도서관 문현자료의 대량 복제 가능성이 상존하며 교육기관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저작권법과 미묘하게 갈등하고 충돌할 일들이 많이 있다. 어쨌든 학교도서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쁜 일인지도 하다. 학교도서관이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이야말로 “학교도서관은 황폐한 책 창고”라는 일리있는 유언비어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은 저작권문제로 고민한다고 해도 주로 〈도서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도서대여권(public lending right)정도에나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주입식 교육방법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열린교육, 주제발표, 토론식수업, 자료탐구학습, 정보활용능력 등등 학습과 직접 관련된 교육계의 화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공간, 사교육비 절감, 인성교육, 정보활용능력 등이란 교육계의 담론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학교도서관 기능의 재발견과 활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드디어 학교도서관은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도서 외에 학습과 교과수업 등과 관련지어 자료탐구 학습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학습방법에 의존하는 교육현장의 벽이 두껍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즉 사서교사 집단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현실적 능력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논리와 말이 아니라 얼마나 현장감있게 보여주면서 교육의 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학교도서관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고 저권법에 대한 고민의 때가 왔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에도 드디어 봄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고민 사서교사의 기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협동교수, 교수학습학력 등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발생되는 도서관 자료이용은 사례2과 같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즉 한 학년이 5학급이든 15학급이든 전체가 똑같은 자료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찾기 마련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시기, 방법과 – 특히 고등학교의 내신은 대학입시에 반영됨으로 실험 실습 실기 등의 평가도 정밀한 객관성을 요구한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과제 작성은 필수이다. – 학교도서관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교도서관의 고민은 출발된다. 과연 동시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본자료를 학교도서관에서는 비치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해마다 반복되는 과제이고 주기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수십부의 복본을 준비해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어쩔수 없이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공동이용과 복사에 비중을 더 둘 수 밖에 없다. 복본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부수의 자료

를 도서관에서 복사한다거나 학생수에 버금가는 대량복사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점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과연 이부분을 현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볼 수 있을까 – 즉 1인1부에 제공하는 경우로 –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참고서 저작권의 예외적 적용을 받는 교과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면 교과서 교육이라는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있는 이때에 다양한 참고자료의 복제를 넓은 의미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1, 3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

과연 사례2과 같은 부분까지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까? 이 부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현장 교육상황에 맞추어 공익적 허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주는 것으로 생각해 고민해 볼만한 문제이다. 사서교사들도 복사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와 보상과 학교교육과 도서관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갈등점을 어떻게 조화내지는 만족시킬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여기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진실로 고충이 아니요 즐거운 고민이요 기쁨인 것이다.